

병 무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0. 5. .

병 무 청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 중 20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배정하고,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여 배정하며, 11명은 지방병무청 정원 11명(8급 6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6명)하여 배정하고, 신설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은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으로 배정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지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호를 삭제한다.

17.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제8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8.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제8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제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15.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

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중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 및 동원훈련과를”을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 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을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병역진로설계지원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에 관한 사항

제5장의2(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 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체역 심사제도의 연구·개선

4. 대체역 편입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배정, 심사결과의 통지

5. 위원회 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8. 대체역 제도 관련 민원상담 및 행정심판·소송의 대응

9. 청사 내 전산·통신·방송 장비의 관리

10.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체역 편입 심사 건에 대한 사실조사, 현장 확인 등에 대한 면담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체역 편입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제44조제2항 중 “2명(7급 2명)”을 “3명(7급 3명)”으로 한다.

제45조제6항 중 “41명(7급 26명, 8급 7명, 9급 8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2명(7급 1명, 8급 11명)”을 “41명(7급 26명, 8급 7명, 9급 8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2명(7급 1명, 8급 11명) 및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장(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7조(평가대상 조직)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278”을 “2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4”를 “27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3의 2 중 총계 “279”을 “277”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5”를 “273”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502”를 “1,49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492”를 각각 “1,481”로 하며, 행정서기 “329”를 “323”으로, 행정서기보 “276”을 “274”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4”로, 통신운영서기보 “5”를 “4”로, 사무운영서기보 “31”을 “28”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506”를 “1,49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496”를 각각 “1,485”로 하며, 행정사무관 “56”을 “57”로, 행정주사 “215”를 “214”로, 행정서기 “332”를 “326”으로, 행정서기보 “258”을 “256”으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를 “13”으로, 통신운영서기보 “5”를 “4”로, 사무운영서기보 “31”을 “28”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의 소관사무는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별표 6의3]

대체역 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7항 관련)

총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행정사무관	12
행정주사	8
행정주사보	7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7]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1과	6명 (4급 1명, 5급 4명, 6급1명)	2020년 5월 00일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2과	5명 (4급 1명, 5급 4명)	2020년 5월 00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설></u>	<u>17.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u>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9.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u>	<u><삭제></u>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입영동원국) ①·② (생략)	제8조(입영동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11.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u>	<u><삭제></u>

12.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u><삭제></u>
13. · 14. 삭제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u>7.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u>
<u><신설></u>	<u>8.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u>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8.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u>	<u>8.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u>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복무국) ①·② (생략)	제9조(사회복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u> 7. ~ 16. (생략) ④ <u>삭제</u> ⑤ ~ ⑧ (생략)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 1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u> 15. <u>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등에 관한 사항</u> 16. <u>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17. <u>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② (생략) ③ <u>서울지방병무청 입영관리국에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 및 동원훈</u>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u>

<u>련과를 두고, 사회복지관리국에 사회복지과·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고객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u> ④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 4. (생략)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 ① ~ ⑧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u> ----- ----- -----. ④ --- <u>과장 및 팀장</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u> 2. <u>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에 관한 사항</u> <u>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u> <u>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u>
--	--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
인 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 관
리에 관한 사항

3. 대체역 심사제도의 연구·개
선

4. 대체역 편입신청 및 이의신
청 접수·배정, 심사결과의 통지

5. 위원회 운영과 그 규정의 제
정 및 개정

6.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8. 대체역 제도 관련 민원상담
및 행정심판·소송의 대응

9. 청사 내 전산·통신·방송 장비
의 관리

10.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체역 편입 심사 건에 대한
사실조사, 현장 확인 등에 대

한 면담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체역 편입 요건 인
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
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
명)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③ (생 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
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
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
명(5급 3명) 및 제4항에 따라 지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명(7급 3명)-----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8	276	△2
·	·	·	
·	·	·	
일반직 계	274	272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18	16	△2
·	·	·	
·	·	·	

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부 감
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26
명, 8급 7명, 9급 8명)과 특별사
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2
명(7급 1명, 8급 1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41명(7급 26
명, 8급 7명, 9급 8명), 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2명
(7급 1명, 8급 11명) 및 병역진
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
명(9급 1명)-----.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
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
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조직 및 정원
제47조(평가대상 조직) 「병무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의2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9</u>	<u>277</u>	△2
·	·	·	
·	·	·	
일반직 계	<u>275</u>	<u>273</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6</u>	△2
·	·	·	
·	·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본문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02</u>	<u>1,491</u>	△11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492</u>	<u>1,481</u>	△11
일반직 계	<u>1,492</u>	<u>1,481</u>	△11
·	·	·	
·	·	·	
행정서기	<u>329</u>	<u>323</u>	△6
·	·	·	
·	·	·	
행정서기보	<u>276</u>	<u>274</u>	△2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4</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1</u>	<u>28</u>	△3
•	•	•	
•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단서 및 제4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06</u>	<u>1,495</u>	△11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496</u>	<u>1,485</u>	△11
일반직 계	<u>1,496</u>	<u>1,485</u>	△11
•	•	•	
•	•	•	
행정사무관	56	57	+1
•	•	•	
•	•	•	
행정주사	215	214	△1
•	•	•	
•	•	•	
행정서기	<u>332</u>	<u>326</u>	△6
•	•	•	
•	•	•	
행정서기보	<u>258</u>	<u>256</u>	△2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2</u>	<u>13</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1</u>	<u>28</u>	△3
·	·	·	
·	·	·	